

##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에서 위임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, 지정·지정취소의 방법·절차, 세부 유형 및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)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을 말한다.

1. 제5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
2. 제5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다목의 설치기준

제3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)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시설 및 설비 목록(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

한다)

3.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(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

#### 4. 운영계획서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2. 건축물대장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4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5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)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: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
2.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: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(장애아 전문, 장애아 통합) 어린이집 지정신청서

(앞쪽)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|     |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|-----|--|
| 접수번호  |                | 접수일자 |      | 처리기간      |    | 30일 |  |
| 신청인   | 성명(대표자 또는 설치자) |      |      | 법인·단체명    |    |     |  |
|       | 주소             |      |      | (전화번호 : ) |    |     |  |
| 개요    | 명칭             |      |      | 종류        |    |     |  |
|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|      |      | (전화번호 : ) |    |     |  |
|       | 원장 성명          |      |      | 생년월일      |    |     |  |
|       | 정원             |      |      | 명         |    |     |  |
| 시설설비  | 보육실            | m²   | 양호실  | m²        | 대지 | m²  |  |
|       | 놀이터            | m²   | 조리실  | m²        | 기타 |     |  |
|       | 사무실            | m²   | 목욕실  | m²        |    |     |  |
| 보육교직원 | 총인원            |      | 보육교사 |           | 비고 |     |  |
|       | 명              |      | 명    |           |    |     |  |
| 예산    | 수입액            |      | 지출액  |           | 비고 |     |  |
|       | 원              |      | 원    |           |    |     |  |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제2항 및 「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( ) 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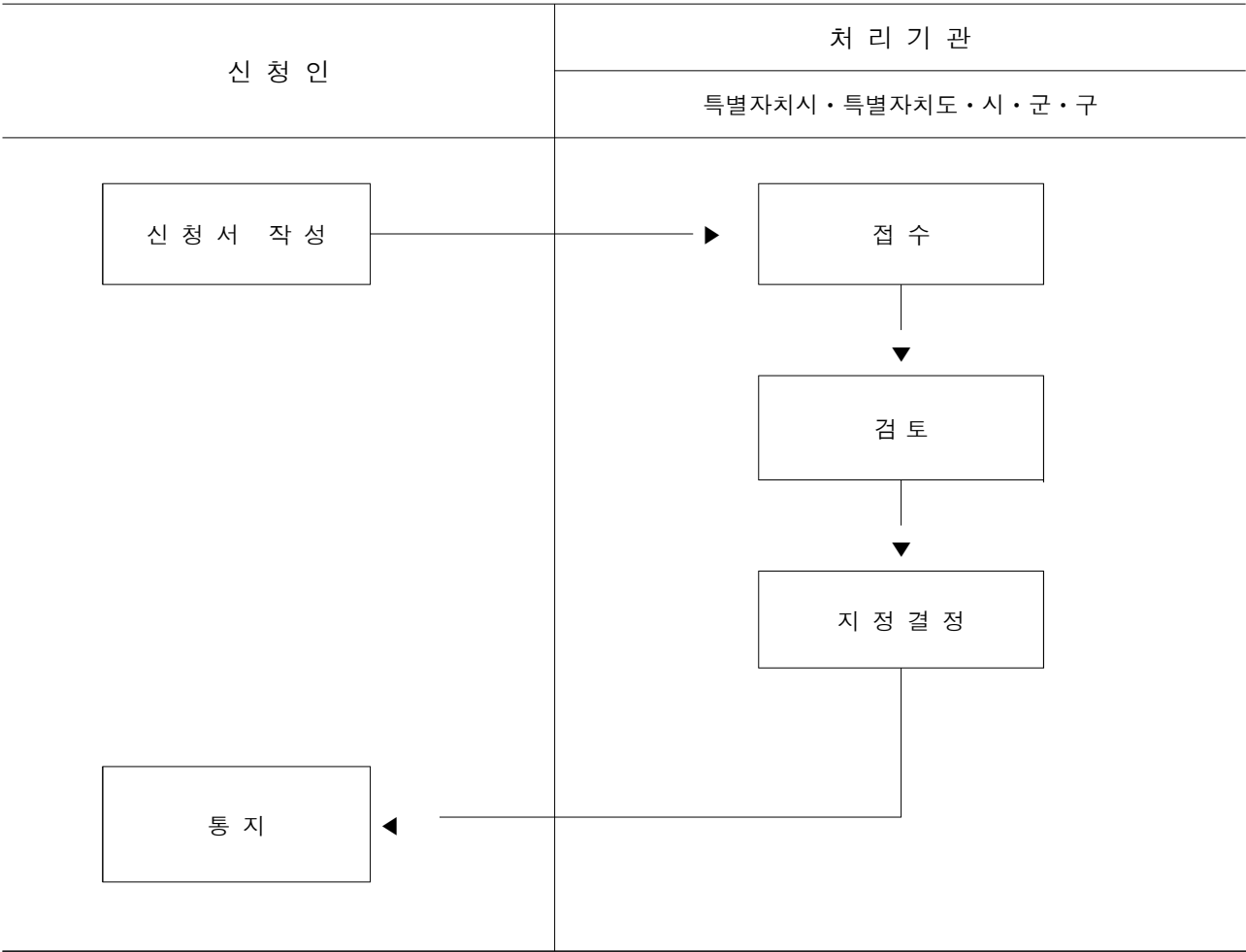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   | 1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br>2. 시설 및 설비 목록(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포함합니다)<br>3.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(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br>4. 운영계획서(어린이집·보육교직원 현황, 교육계획안, 예산서)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건축물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제 호

## (장애아 전문, 장애아 통합) 어린이집 지정서

지정 분야: ( ) 어린이집

어린이집의 명칭:

소재지:

정원: 명

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 )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제2항 및 「장애영유아를 위한  
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시설을  
( ) 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 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